

<공개용>



보건소 종합감사 결과 보고

감사결과의 공개는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및 「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개합니다.



울산광역시 동구
ULSAN METROPOLITAN CITY DONGGU
(기 획 예 산 실)

보건소 종합감사 결과 보고

보건소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진단하고, 부당 및 업무처리 소홀 사항에 대해 시정·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한 보건소 종합감사 결과 보고임.

I 감 사 개 요

- 감사기간: 5. 11. ~ 5. 20.(10일간)
- 점검범위: 2023. 6월 ~ 2026. 5월
- 감사중점: 예산집행, 의약품 관리, 전염병 예방, 의약업소 지도점검 등
- 감 사 반: 감사팀장 등 4명
-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연찬회 실시: 5. 20.(수) 14:00

II 감 사 결 과

□ 총 평

- 종합감사 결과 전 직원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으나, 소관 업무 중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,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, 계약심사 미이행, 지방보조금 업무 절차 미준수, 상품권 구매사용 관리 소홀, 민원실 수입금 세입조치 소홀 등 미흡한 점이 지적되어 감사 종료 후 업무연찬회 실시로 재발 방지 등 업무능력 배양의 계기가 되었음.
- 보건소는 지역 관내 체육시설과 민·관 협력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'가벼운 동구 날씬하이소' 사업을 운영하여 비만예방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실천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.

□ 총 지적건수: 5개 분야 11건

분야	계	회계	감염병	건강관리	보건기획	복무
지적건수	11	6	1	1	1	2

□ 지적사항 처분요구 목록

분 야	지 적 사 항	처분요구				비고
		행정상(건)		재 정 상 (천원)	신 분 상 (건/명)	
		시정	주의			
5개 분야	11건	3	8	1,081	-	
회 계	1.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	1		575		환수
	2.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	1		400		환수
	3. 계약심사 미이행		1			주의
	4. 착공신고서 접수처리 부적정		1			주의
	5.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미수립		1			주의
	6.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 소홀		1			주의
감 염 병	7. 지방보조금 업무 절차 미준수		1			주의
건강관리	8.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류 접수 부적정		1			주의
보건기획	9. 보건소 민원실 수입금 세입조치 소홀		1			주의
복 무	10. 가족돌봄휴가 사용 관리		1			주의
	11. 자기계발휴가 사용 부적정	1		106		환수

Ⅲ 사안별 지적사항 및 처분(건의)

□ 관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

-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에 의하면 근무지 외 국내여비 지급시 숙박비, 운임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에 따르게 되어있고, 자동차 운임비는 철도 또는 버스 운임을 지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「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에 따라 연료비 지급기준(출장거리×유가/연비)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따라서, 국내여비를 집행할 때 출장공무원에게 숙박 영수증을 비롯하여 버스나 철도 승차권이나 자가용 운임시의 통행영수증, 주유결제전표, 주차영수증 등 출장 증거서류를 요구하여야 하며, 출장자가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음
- 보건행정과에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관외출장 운임비를 실비로 지급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임과 같이 ◇◇◇◇ 8급 ◎◎◎ 등 10명은 증빙서류 없이 운임비·숙박비 등 지급한 사실이 있음.

〈 처분요구 : 행정상 시정, 환수 575,130원 〉

- 보건소장은 과다 지급된 575,130원을 환수하고,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하고, 관련자에게는 주의 촉구

※ 관외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현황

No.	성명	출장목적	출장일시	출장지	환수구분	환수액 (여비지급)
계						575,130
1	○○○	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교육참석	'23.12. 4.	부산	운임비	11,000 (52,000)
2	△△△	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교육참석	'23.12. 4.	부산	"	11,000 (52,000)
3	□□□	FETP-F 최종평가대회 참석	'23.11.15. ~ 11.16.	경주	"	10,000 (50,000)
		2024 HIV진단검사 워크숍	'24. 5. 9. ~ 5.10.	여수	유류비	60,000 (230,000)
		한센병관리 담당자반 교육 참석	'24. 6. 4. ~ 6. 5.	대구	숙박비	80,000 (199,900)
4	◇◇◇	울산과학대 간부학부 산학협력협의회 세미나참석	'24. 1.10.	부산	운임비	13,600 (63,600)
		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 직무교육 및 총회 참석	'24.10.24. ~ 10.25.	대구	"	11,000 (191,000)
5	★★★	지역사회 건강조사 국고보조사업	'24. 1. 4.	대구	유류비	34,530 (74,530)
6	◎◎◎	2023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(1단계)	'23. 6.29. ~ 6.30.	부산	"	20,000 (200,000)
		2023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(2단계)	'23. 7.27. ~ 7.28.	부산	"	20,000 (200,000)
		2023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(3단계)	'23. 8.31. ~ 9. 1.	부산	"	20,000 (200,000)
		2023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(4단계)	'23.10.12.	부산	"	20,000 (70,000)
7	◆◆◆	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가족파트너십 모델 교육 참석	'25.11.24. ~ 11.26.	서울	조식비	66,000 (453,800)
8	▼▼▼	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가족파트너십 모델 교육 참석	'25.11.24. ~ 11.26.	서울	"	66,000 (453,800)
9	☎☎☎	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가족파트너십 모델 교육 참석	'25.11.24. ~ 11.26.	서울	"	66,000 (453,800)
10	☎☎☎	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가족파트너십 모델 교육 참석	'25.11.24. ~ 11.26.	서울	"	66,000 (453,800)

□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

○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따르면 행사운영비(201-03)은 행사 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(각종 일반수용비, 임차료, 강사료 등)로 편성하게 되어 있음.

○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13조제2호 및 [별표 2의2]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, 행사운영비는 행사를 운영하고, 그 행사 운영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로 집행할 수 있다. 다만, 식비는 일반수용비·임차료 등 행사운영의 직접적인 경비와 함께 수반하는 부수적 경비로 독립적·상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제한됨.

※공무원 급식비 보전 목적 편성 불가

○ 그러나 건강관리과는 2025년도 건강지킴터(찾아가는 작은 보건소) 운영을 목적으로 행사운영비를 편성하고, 당초 행사 운영계획(2025년 산업장·전통 시장 건강체험관 운영계획)에 없는 타 부서 주관 행사의 체험부스 참여 직원의 중식비로 집행하여,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하였음.

〈 처분요구 : 행정상 시정, 환수 400,000원 〉

- 보건소장은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지출된 400,000원을 환수하고,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하고, 관련자에게는 주의 촉구

※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현황(행사 운영 부수경비가 아닌 단순 식비로 지출)

건 명	집행일자	집행금액(원)	참여인원		행사주관부서
			결과보고	품의공문	
구민화합 한마당 건강체험관 운영 직원 중식제공	2025.10.28.	240,000	14명	15명	문화체육과
ok생활민원 서비스의 날 연계 건강체험관 운영 직원 중식제공	2025.10.31.	160,000	9명	16명	자치행정과

□ 계약심사 미이행

- 「울산광역시 동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」 제3조(대상사업) 및 제4조(범위)에 의거 5천만원 이상 각종 공사, 2천만원 이상 용역 및 물품구매 등 사업 발주 전 계약심사를 요청하여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원가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 받아야 함.
- 또한, 동 규정 제8조(심사결과)에 의거, 발주부서는 계약심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 결과를 통지받고, 심사부서에 조치결과를 제출함과 동시에 계약을 추진하여야 하나,
- 보건행정과에서 계약심사 대상사업인 2천만원 이상 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추진한 사실이 있음.

〈 처분요구 : 행정상 주의 〉

- 보건소장은 「울산광역시 동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」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하고, 관련자에게는 주의 촉구

※ 계약심사 미이행 현황

사 업 명	발주금액	계약심사	
		심사대상(기준)	심사 이행여부
남목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 의도 구현 용역 시행 건의	22,000천원	용역 (2천만원 이상)	x

□ 착공신고서 접수처리 부적정

-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·착수(이하 '착공')해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, 공사·용역을 완성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·완료(이하 '준공')신고서 등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, 착공신고서, 준공신고서는 착공·준공 일정, 검사기간 산정 등 공사·용역 계약의 필수적인 서류이며,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

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나,

- 보건행정과에서는 상기 공사·용역 추진시 계약상대자로부터 받은 착공신고서에 전자기록 시스템으로부터 비전자문서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.

〈 처분요구 : 행정상 **주의** 〉

- 보건소장은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및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하고, 관련자에게는 주의 촉구

※ 착공신고서 접수처리 부적정 현황

시행연도	사 업 명	계약금액(천원)	도급자	대장등재
2023	2023년 보건소 지하 주차장 노후 형광등기구 교체	20,194	주식회사 ☞☞☞☞	착공신고서 미 등재

□ **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미수립**

-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에 의하면 “기관운영, 정원가산·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,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한다.”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,
-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는 2024년, 2026년, 건강관리과는 2024년 ~ 2026년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음.

〈 처분요구 : 행정상 **주의** 〉

- 보건소장은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하고, 관련자에게는 주의 촉구

※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미수립 현황

부 서 명	2024년	2025년	2026년	비고
보건행정과	미수립	수립(25. 1. 6.)	미수립	
건강관리과	미수립	미수립	미수립	

□ 상품권 구매·사용 및 관리 소홀

- 「울산광역시 동구 상품권 구매·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」 제8조에 따르면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 상품권 구매·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.
- 또한, 동 지침 제11조에 따르면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 종류별 구매 용도, 구매 수량, 총 구매액 등을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울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나,
- 보건행정과는 2024년~ 2026년 현재까지 직원 생일기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 하면서 관리대장 작성 및 공개 업무를 하지 않는 등 상품권 구매·사용 및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.

〈 처분요구 : 행정상 주의 〉

- 보건소장은 「울산광역시 동구 상품권 구매·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」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하고, 관련자에게는 주의 촉구

※ 착공신고서 접수처리 부적정 현황

연번	건 명	대상자	집행일자(품의)	집행금액(원)
1	2024년 1/4분기 직원생일기념 문화상품권 구입	20명	2024.03.05.	600,000
2	2024년 2/4분기 직원생일기념 문화상품권 구입	14명	2024.06.04.	420,000
3	2024년 3/4분기 직원생일기념 문화상품권 구입	18명	2024.09.03.	540,000
4	2024년 4/4분기 직원생일기념 문화상품권 구입	20명	2024.11.12.	600,000
5	2025년 1분기 직원 생일기념 문화상품권 구입	22명	2025.03.31.	660,000
6	2025년 2-3분기 직원 생일기념 온누리상품권 구입	33명	2025.09.17.	990,000
7	2025년 4분기 직원 생일기념 온누리상품권 구입	21명	2025.12.08.	630,000

□ 지방보조금 업무 절차 미준수

- 「지방보조금법」 제14조에 의하면,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당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또한 같은 법 제19조 및 「지방보조금 업무 안내」에 따라 사업 종료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 및 정산검사 후 소관부서에서는 사업자에게 보조금 확정통지를 하여야 하나,
- 보건행정과는 보조사업자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의 2024년도 한센병관리사업 보조금 신청에 따라 2024. 2월에 보조금 교부 후에 2024. 5. 20.에 사업 대상자(5명) 중 1명이 사망(2023. 12월) 사실을 확인 하였음. 이에 따라, 보조금 산출근거가 되는 환자 수(보조금 산출근거 항목) 감소로 인한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배분을 변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, 별도의 변경 검토 및 승인이 없이 당초 교부된 보조금 그대로 사업실적 및 보조금 정산서를 접수하고, 그 후 정산검사 및 확정통보를 하지 않는 등 보조금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.

〈 처분요구 : 행정상 주의 〉

- 보건소장은 「지방보조금법」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하고, 관련자에게는 주의 촉구

※ 지방보조금 업무 절차 미준수 현황

연 도	보조금사업명	보조사업자	교부액	사업 변경사항
2024년	한센병관리사업	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	5,650천원	한센사업대상자 감소(5명→4명) ※ 2023. 12월 1명 사망

※ 보조금 산출근거: 기본사업비(4,500천원)+ { 환자수(5명)×약품단가(230천원) } = 5,650천원

□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류 접수 부적정

- 「모자보건법」 제15조의18 및 「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편람」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

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복지로 사이트,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에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신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으나,

- 건강관리과에서는 □□□ 등 3명의 바우처를 신청 받으면서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서에 개인정보활용동의와 기타 유의 사항 확인서명 등 기재 사항이 누락되었음에도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신청서를 수리하는 등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.

〈 처분요구 : 행정상 주의 〉

- 보건소장은 「모자보건법」 및 「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편람」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하고, 관련자에게는 주의 촉구

※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류 접수 부적정 현황

신청일	성명	생년월일	비고
2023. 11. 21.	□□□	○○○○○○○	성명기재 누락
2025. 02. 24.	◎◎◎	○○○○○○○	서명누락
2025. 05. 26.	☆☆☆	○○○○○○○	서명누락

□ 보건소 민원실 수입금 세입조치 소홀

- 「지방회계법」 제22조(수납기관)에서는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, 아울러 「울산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」 제6조(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)에의거 전자수입증지 판매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.
- 보건행정과에서는 민원실 수입금에 대하여 정당 납입일자보다 2일5일간 지연 납입하는 등 수입금에 대한 세입조치를 소홀히 한 내역이 있음.

〈 처분요구 : 행정상 주의 〉

- 보건소장은 「지방회계법」 및 「울산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」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하고, 관련자에게는 주의 촉구

※ 보건소 민원실 수입금 세입조치 현황

발생일자	금액(원)	정당 납입일자	실제 납입일자	납입 지연일 수
2023.06.02.	25,500	2023.06.05.	2023.06.09.	3
2023.06.09.	29,500	2023.06.12.	2023.06.15.	3
2023.06.15.	9,500	2023.06.16.	2023.06.23.	5
2024.05.27.	7,000	2024.05.28.	2024.05.30.	2
2024.11.13.	14,000	2024.11.14.	2024.11.18.	2
2024.12.10.	7,500	2024.12.11.	2024.12.16.	3
2025.02.25.	19,000	2025.02.26.	2025.03.04.	3
2025.06.10.	13,000	2025.06.11.	2025.06.16.	3
2025.06.27.	16,000	2025.06.30.	2025.07.02.	2
2025.08.14.	92,050	2025.08.18.	2025.08.20.	2

□ 가족돌봄휴가 사용 관리 소홀

-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에 따르면, 공무원은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, 원칙적으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, 미성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 유급으로 하고,
-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집 등의 휴업·휴원 등, 자녀 등의 학교 입학식·졸업식·교사 상담 및 병원 진료·검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등록하여야 하며,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이 제출·등록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나,
- 보건소는 대상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때 증빙자료를 누락하였음에도 이를 승인하였으며, 병원 진료 등과 같이 사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특별휴가 사용 승인하여 총 3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음.

〈 처분요구 : 행정상 주의 〉

- 보건소장은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하고, 관련자에게는 주의 촉구

※ 가족돌봄휴가 사용 관리 소홀 현황

No.	성명	특별휴가목적	일 시	특가일수	유/무급 구분	증빙서류 유·무
1	◇◇◇	자녀병원진료	2023. 6.26.	1일	유	무
		자녀 병원진료	2025. 5.29.	30분	유	무
2	△△△	병원진료	2024.12.18	2시간	유	무
3	♣♣♣	병원진료	2025. 6. 4.	1일	유	무

□ 자기계발휴가 사용 부적정

- 「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,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연간 3일의 자기계발휴가를 쓸 수 있고, 휴가 사용 시 반드시 ‘연가1일’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.

※ 총무과-6022 (2025.3.26., 특별휴가 시행지침 개정)

- 그럼에도, 보건행정과는 대상자가 자기계발휴가를 신청할 때 연가1일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누락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특별휴가 사용 승인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음.

〈 처분요구 : 행정상 **시정, 환수 106,130원** 〉

- 보건소장은 오지급된 연가보상비 106,130원을 환수하고, 「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하고, 관련자에게는 주의 촉구

※ 자기계발휴가 사용 부적정 현황

No.	성명	특별휴가목적	일 시	특가일수	유/무급 구분	연가1일 사용여부
1	●●●	자기계발휴가	25. 4. 9. ~ 4. 10.	2일	유급	부 (연가보상비 106,130원 환수)